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4가합50610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4. 인천신용보증재단

변론 종결2014. 12. 4.

판결 선고2015. 2. 1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710,810원 및 그중 452,291,951원에 대하여는 2013. 11. 29.부터, 453,020,547원에 대하여는 2013. 12. 9.부터 각 2014. 7. 2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넥센타이어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3. 8. 6. 접수 제3726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3. 8. 9. 접수 제3799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피고 넥센타이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의 가.항 및 피고 넥센타이어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넥센타이어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 피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3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3의 가.항 및 피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3. 2.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45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4. 2. 20.,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가좌공단지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50,000,000원, 피보증인을 피고 A, 보증기한을 2014. 2. 20., 대출예정금액을 500,000,000원(보증비율 90%)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45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4. 2. 20., 채권자를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농협은행(계산지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50,000,000원, 피보증인을 피고 A, 보증기한을 2014. 2. 20., 대출예정금액을 500,000,000원(보증비율 90%)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는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의 이행 및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의 연대보증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 당시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사실상 폐업 등을 원인으로 2013. 10.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013. 11. 6.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각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9.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금

452,340,986원(= 원금 450,000,000원 + 이자 2,340,986원)을, 2013. 12. 9. 농협은행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금 453,020,547원(= 원금 450,000,000원 + 이자 3,020,547원)을 각 지급하여 피고 A의 대출원리금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1,398,135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9. 피고 A로부터 49,035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는데, 위 회수금액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77원이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 A는 2013. 7. 23. 피고 넥센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넥센타이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D, 피고 A,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6. 피고 넥센타이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37261호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또한 피고 A는 2013. 8. 9. 피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피고 인천신용보증'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A, 채권최고액을 46,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인천신용보증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37990호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 피고 A: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넥센타이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 인천신용보증재단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710,810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 452,291,951원(= 452,340,986원 - 회수금 49,035원) +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453,020,547원 + 채권보전비용 1,398,135원 + 확정손해금 177원) 및 그중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 452,291,951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3. 11. 29.부터,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453,020,547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3. 12.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4. 7.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넥센타이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와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비록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이미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4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인 2013. 10. 29.과 2013. 11. 6.에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각각 발생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3. 7. 23. 당시에는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이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10, 11호증,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당진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시가 2,811,588,95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반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906,710,810원¹⁾,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966,940,353원, 피고 넥센타이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44,826,103원 등 합계 3,318,477,266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 A가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특정 채권자인 피고 넥센타이어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 등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넥센타이어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넥센타이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넥센타이어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타이어 등 자동차 관련 제품의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A를 설립하여 피고 넥센타이어와 사이에 도매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넥센타이어로부터 자동차용 타이어를 공급받아 오던 중, 2012. 4. 18. 기존 타이어 수출과 병행하여 물류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D 역시 피고 넥센타이어와 사이에 도매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넥센타이어로부터 자동차용 타이어를 공급받아 왔다. 비록 피고 A와 D가 형식상 별도의 법인이라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 두 회사는 동일한 법인이자 피고 B의 1인 회사이다.

(2) 2012. 7.경 피고 넥센타이어에 대한 피고 A와 D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1,000,000,000원을 넘게 되었고, 피고 넥센타이어는 피고 B에게 위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동차용 타이어를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피고 B은 피고 넥센타이어가 자동차용 타이어를 공급하여 주지 않을 경우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말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계속해서 자동차용 타이어를 공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넥센타이어는 피고 A와 D가 사업을 정상화하여 변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물품대금채무의 액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60,000,000원만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피고 넥센타이어는 D 양천지점에 2013. 8.부터 2013. 10.까지 합계 229,269,238원 상당의 자동차용 타이어를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이와 같이 공급받은 자동차용 타이어를 수출하여 피고 A와 D의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나) 살피건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넥센타이어의 주장과 같이 피고 A의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다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A와 D의 대표이사가 모두 피고 B이고, 위 각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E는 피고 B의 배우자인 사실, ② 피고 A와 D는 피고 넥센타이어와 사이에 피고 넥센타이어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공급받기로 하는 도매대리점거래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 A는 2011. 4.경부터, D는 2012. 5.경부터 피고 넥센타이어로부터 자동차용 타이어를 각각 공급받아 온 사실, ③ 피고 B은 피고 A와 D가 위 각 도매대리점거래계약에 따라 피고 넥센타이어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④ 2013. 7.경 위 각 도매대리점거래계약에 따른 피고 A와 D의 피고 넥센타이어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각각 444,826,103원과 556,121,789원에 이른 사실, ⑤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피고 넥센타이어는 2013. 8.부터 2013. 10.까지 D의 양천타이어점에 합계 229,269,238원 상당의 자동차용 타이어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 A와 D가 동일한 회사라거나, 위 회사들이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의 1인 회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넥센타이어는 2012. 5.부터 피고 A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 A에게 도매대리점거래계약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공급한 바 없으므로, 결국 피고 A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A와 D로 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A와 D가 피고 넥센타이어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장차 D가 피고 넥센타이어로부터 공급받을 물품에 대한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가 피고 넥센타이어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넥센타이어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넥센타이어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넥센타이어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활발하게 타이어 판매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 시가 3,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각 채권최고액이 1,404,000,000원과 420,000,000원인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는 다른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진 바 없는 등 피고 A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고 넥센타이어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넥센타이어는 2012. 5.경부터 피고 A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로부터 444,826,103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 A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넥센타이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위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고 위 피고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넥센타이어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처럼 피고 A와 피고 넥센타이어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A의 채권자들을 자인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넥센타이어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인천신용보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바, 피고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인천신용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A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 인천신용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익자인 피고 인천신용보증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 A와 피고 인천신용보증 사이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인천신용보증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넥센타이어, 인천신용보증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동기

판사고범진

판사유혜주

별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